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9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백혜련 · 허성무 · 남인순
이광재 · 곽상언 · 이강일
이수진 · 박상혁 · 염태영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동결보존 된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보존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채취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난자·정자의 보존 목적에 관한 사항
2. 난자·정자의 보존기간, 폐기 및 이관에 관한 사항
3. 잔여 난자·정자의 연구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5. 채취 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2항”을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2항”을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 ----- -----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동결보존 된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할 때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보존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채취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난자·정자의 보존 목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남자 · 정자의 보존기간, 폐기 및 이관에 관한 사항

3. 잔여 난자·정자의 연구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동의를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5. 채취 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

-----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④ 제1항 및 제2항-----

-----.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① --
--
--
--
--
--
--
--
. --

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39조제4항, 제53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생성·보존·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체세포복제배아등·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정자

2. (생략)

② (생략)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

1. -----
----- 제24조제1항·제2항-----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

제58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제4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제3항,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전단·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2. ~ 4. (생략)

②·③ (생략)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제58조(과징금) ① -----

-----.

1.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①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24조제1항</u> 을 위반하여 서 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 를 채취한 자	2. <u>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u> ----- -----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